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24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서영교 · 이해식 · 정준호
박희승 · 위성곤 · 김문수
허영 · 조계원 · 양부남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 또한 심화되면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수산양식물 피해 등 농가·어가의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경영 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실제로 농가·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 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의 정의에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어업 생산물 및 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용 시설과 산림작물 재배 시설은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업 분야는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어가·임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의 범위에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을 포함시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일조량 부족’ 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 재배시설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임업 분야도 농업·어업과 함께 재해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을 “지진, 해일, 태풍, 강풍”으로,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을 “병해충(病害蟲)”으로,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형 산불(「산림보호법」 제37조의 대형 산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5조 제1항”을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상수온(異常水溫)”을 “이상수온(異常水溫), 대형 산불”로, “제5조제2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

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대책의 목표
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해대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8.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재해대책에 드는”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외하되, 복구 및 지원 금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복구비 및 지원금 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비료대금”을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는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 ----- 지진, 해일, 태풍, 강풍 ----- ----- ----- ----- ----- 병해충(病害蟲)----- ----- ----- ----- ----- 말한다. 이하 같다), 대형 산불(「산림보호법」 제37조의 대형 산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제5조제1항----- -----.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3. ----- -----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
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
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 1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이상수온(異常水溫),
대형 산불-----

-----제5조제1항-----

4. ~ 13. (현행과 같음)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
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
한다.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
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
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
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대책의 목표

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

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재해대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

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8.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

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제외하되, 복구 및 지원 금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 략)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 10.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나. (생 략)

<신 설>

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복구비 및 지원금 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 10. (현행과 같음)

③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